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봉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4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이봉준, 강석주, 김영철,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중화,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상욱,
이상훈, 이영실,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의원(26명)

1. 제안이유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u>제12조</u> 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 <u>제13조</u> ----- ----- -----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u>한다</u> .	③ ----- ----- ----- ----- -----, ----- ----- ----- <u>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제4호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